글로벌파트너사업 참여업체 모집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해외통상거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강화 및 현지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<u>「글로벌파트너사업 참여업체 모집」</u>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<u>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업체</u>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1일

	. U	114	요
			-

□ 사 업 명 : 2025 글로벌파트너사업

□ 사업기간 : 2025년 3월~11월

□ 대상국가 : 베트남, 인도(중복지원 가능)

□ 지원규모 : 50업체 내외(베트남 25, 인도 25)
□ 지원대상 : 아래의 요건을 **모두 충족하는 업체**

- ①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업체(도내 제조·유통 중소기업)
- ② 외국어 홍보자료(카탈로그 및 홈페이지) 보유업체
- ③ 샘플전시, 바이어 요청이 있는 경우 소량샘플 제공 가능업체
- □ 지워내용

구분	내용	비고
현지시장조사	수요 동향 조사 및 수출가능성 체크, 현지 가격표 및 인증 등	업체당 최대 2회
바이어발굴	잠재바이어 발굴 후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, 기초 컨택 등	업체당 바이어 20개사 이상
기존 거래선 관리	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어와의 업무연락, 비즈니스 F/U 등 지원	-
온라인상담주선	바이어 상담 주선 및 진행 (매칭/통역지원 등)	업체당 2회 이상
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	제품 수출을 위한 기초적인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※제품 관련때기지·사용설명서 등) 및 법률적 책임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지원 미포함	업체당 최대 2회
인허가 취득 지원	인허가 취득 절차 등 컨설팅, 현지 전문 등록대행기관 발굴 소개	업체당 최대 2회
물류통관 자문	물류서비스 필요기업에 대한 정보제공, 물류 전문기업 소개	-
SNS 홍보	거점센터 SNS를 활용한 참여업체·제품 홍보	업체당 10회
보고서	현지정보, 바이어리스트, 진행상황 등 보고서 제공	업체당 2회 (연중·연말)
기타	관심 바이어 면담일정 주선 등	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

□ 추진절차

참여업체 모집	선정평가 및 안내	사업운영	성과 만족도조사
진흥원	진흥원, 거점센터	거점센터	진흥원, 거점센터
3월 중	3월 중	3~12월	11월~12월

2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접수일정 : 2025. 3. 11.(화) ~ 20.(목) 까지

□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(수출통합지원시스템 https://www.jbexport.or.kr)

※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

□ 문의처 : 봉성원 담당관(전화: 063-711-2046, 이메일: bsw@jbba.kr)

□ 제출서류

구분	구 비 서 류	비고		
1	지원사업 신청서(법인인감 날인)	서식 1		
2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서식 2		
3	사업자등록증 사본			
3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		
4	카탈로그 (영문, 베트남어/힌디어)			
5	2024년 '직접'수출실적 증명(무역협회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)			
6	2024년 4대 보험가입 증명 자료			
7	여성기업, 벤처기업, 유망 중소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해외규격인증,			
	그 외 담당자가 수출영향력을 인정하는 인증서			

3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일정 : 2025년 3월 中

□ 평가방법 : 서면평가(정량평가40, 정성평가60, 가점5)

구분	평 가 기 준	배점
	합 계	105
정량평가	기업현황, 마케팅인프라, 수출실적 등 수출준비도	40
정성평가	제품경쟁력, 시장전망, 지원기대효과 등 현지 시장진출가능성	60
가점	여성기업, 벤처기업, 유망 중소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 , 해외규격인증, 그 외 담당자가 수출영향력을 인정하는 인증서(각 1점)	최대 5

□ 선정기준 : 고득점순*선정업체 포기시, 차순위선정

※대상국가(베트남, 인도) 중복 제한 없음

4 선정제외 대상

- □ 제출된 서류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
- ☐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·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□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□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□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(도박·사치· 향락,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)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지원제외 업종
게 ㅈ 아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제조업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	46102中	담배 중개업
도매 및 소매업	46~47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,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 46333	주류, 담배 도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임대업	76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기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팅업

5 유의사항

- □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, 지원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□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□ 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사유없이 무단으로 선정·중도포기하는 경우,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끝.